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2호 pp.1~30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2.001>

연구논문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장진희*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종속적이고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자발적 실업경험,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고상해 및 질병경험, 노후대비정도 등 사회보험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열악하고 지배종속적인 노동환경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순위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공제회 가입의 주된 요인을 식별하였다. 분석결과,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거나,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향후 설립을 앞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과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업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해대변의 역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이해대변기구, 실업공제, 순위형 로짓

논문접수일: 2021년 9월 8일, 심사의뢰일: 2021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22년 1월 2일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jhjang8373@gmail.com)

I. 서론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삼면 시장 속성을 지닌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여러 영역에 걸쳐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자 미래의 노동공급 방식, 일자리의 규모 및 내용,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Berg et al., 2018).

특히 ‘플랫폼’이라 통칭하는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에 쉽고 빠르게 결합하는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노동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전체 노동인구 대비 약 2%가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Balaram et al., 2017), 미국 역시 전체 인구의 4.5%가 플랫폼노동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Farrell et al., 2018). 또한 JPMorgan Chase Institute는 2016년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4개 영역 42개 플랫폼을 식별하였으나, 이후 2017년에는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128개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서구 선진국에서 플랫폼노동이 확산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 기술이 더해짐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은 화물운송, 대리운전, 음식배달과 같은 호출형 지역기반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 등 대면서비스업 일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된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의 영역이 배관, 목수, 예술(그림/조각), 반려동물 돌봄, 미용, 레슨, 온라인 크리에이터 등 매우 빠르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는 과거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약 50만 명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김준영 외, 2018), 이후에는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사람까지 최대 1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장지연, 2020).

하지만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지 못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법적 보호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의 대표적 특징인 종속성과 자영인의 특징인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분방식에 따라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도재형, 2013).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있어 전속성이 높은 9개 업종,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밝혀 빠르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게다가 플랫폼노동 영역에서 고용보험 외의 사회보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미흡하다.

최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제회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공제회란 공동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상호부조 단결체로, 이미 스페인의 라군-아로(Lagun-Aro), 프랑스의 의료공제조합(La Mutuelle Générale), 일본의 PE공제 및 카즈·소장 공제 주식회사(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共済株式会社) 등 공제회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학자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제회 시스템을 통해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공제회가 사회보험의 조합주의, 기존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그리고 법적 보호를 외면한 방식이라는 등의 비판으로 인해 크게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20년 5월 26일 플랫폼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공제회의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어 2020년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2021년 3월 발의된 이른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발의를 앞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노동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를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이미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가 설립·운영되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을 조망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설립된다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우려가 공제회의 주된 가입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회와 같이 퇴직에만 집중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종속성, 그리고 실업경험과 건강, 노후대비 정보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종속성과 사회보장체계로부터의 배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제회 설립 및 가입대상의 구체화, 나아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제회의 이해대변 및 사회적 보호기구로서의 가능성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보호를 위한 이분법적 구분방식은 전통적 공장제 생산체제에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에 적합하였다(도재형, 2013).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

을 함께 지닌 특수형태근로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어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중첩되는 개념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보다 더욱 플랫폼(사업주)에 종속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회보험법」 등 법적 보호에 배제되고 있다.

법적 보호의 기준은 노동자성 여부라 할 수 있는데, 노동자성의 주된 판단기준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는 단순 계약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여부, 보수성격 및 경제적 종속정도, 비대체성 등 체계적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대다수는 법적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있다(장우찬, 2014).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이 노조법에 제외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는 여타의 노동자에 비해 노동조합 설립에 매우 큰 한계¹⁾를 지니고 있다. 또한,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동환경적 특성 때문에 조직화와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대변시스템을 갖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한인상·신동윤, 2019).

최근에는 노동법으로부터 배제되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이해대변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이해대변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홍준 외, 2019).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와 같이 사업장 중심의 전통적 노동조합 형식을 넘어 집단의 이

1) 실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년 대구대리노조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에 들어서야 전국단위노조로의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다. 라이더유니온 역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우려하여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플랫폼노동자의 노조설립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를 대변한 형태도 존재하나,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 형태는 주로 공제회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공제회를 통한 이해대변 방식은 노동조합 운동을 약화하고 새로운 대안적 대표체계의 형성으로 우려하는 지점도 존재하나, 이는 이분법적 영역으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Fine, 2005, 손정순, 2018). 이러한 점에서 공제회는 박명준·김이선(2016)이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준노조(quasi-union)’의 개념에 부합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공제회 방식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계기는 플랫폼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플랫폼노동자와 건설근로자²⁾의 유사성은 ‘고용관계의 모호성’, ‘시장구조’, ‘사회안전망 보호취약’, ‘노사관계’로 설명된다. 우선,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특정업체(사업주)와 전속성이 부족하고, 며칠 또는 몇 개월의 고용종료 후 지속적인 현장 이동,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뿐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고용관계가 모호하다.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이직 및 퇴직이 잦고,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며 대다수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근로자와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는 법적 근로자 영역에 부합하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회색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접근이 어렵다.

다음으로 삼면시장(three-sided market)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건설업체-수요자(발주처)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플랫폼노동자의 플랫폼노동자-플랫폼-수요자(고객) 구조와 유사하다. 또한, 노동자성 불인정 및 기업단위 접근의 한계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하고, 고용관계의 모호로 인해 노사관계로의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실제로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산재보험은

2)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당연가입대상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의미한다.

99.4%, 고용보험은 71.7%였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6%, 고용보험 가입률은 불과 10.2%에 그친다(김준영 외, 20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84.2%, 국민연금 가입률이 95.4%인 것에 비하면 플랫폼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처럼 건설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실업이나 노후대비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규모에서 차이를 가진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건설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나,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 창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³⁾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현장의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퇴직공제가 대표적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밖의 여러 영역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이해대변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단체보험, 건강검진,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이해대변 및 입법화를 통해 건설노동시장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회복하였고, 저가경쟁을 억제하는 등 노동자 보호, 정상적인 시공 및 고용여건 조성의 성과를 거두었다(심규범, 2020). 그리고 ‘노동자성 회복’, ‘고용단절 회복’, ‘고용여건 조성’ 등을 핵심 기제로 삼고 건설근로자의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유사성,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과 가시적 성과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제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공제회의 개념 및 공제제도의 장점

공제조직 또는 공제회란 정부가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민간이 위임받아 금융기능 또는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협의로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호부조의 방법’이고, 광의로는 ‘서로 구제하기 위하여 돕는 것’으로 정의

3)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거쳐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란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1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된다. 즉, 공제란 복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통목적과 공동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사회행동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Kropotkin, 2012).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는 공제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① 회원소유, ② 민주주의, ③ 연대, ④ 한정된 집단과 목적에 기여, ⑤ 이익 또는 손실의 회원 귀속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공제협회(日本共濟協會)(2019) 역시 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제공하는 보장구조’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공제회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상호부조 조직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공제형태의 분류

		분류내용
보험형 공제	조합공제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일반공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준회원 등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제
	정책성 공제	공공부문에서 정책적으로 특정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자료: 오영수 외(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오영수 외(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제회 기능에 따라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4)로 구분한다. 그중 보험형 공제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를 의미하며, ‘조합공제’, ‘일반공제’, ‘정책성 공제’로 나눌 수 있다. 조합공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 공제조합의 형태로, 공제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반면, 일반공제는 조합원의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준조합원, 준회원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 대표적으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회를 운영하는데, 이는 형태상으로는 조합공제에 포함되지만 설립취지와 주체가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

4) 상호부조형 공제란 산업별 특정 산업종사자들의 복지, 퇴직급여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이 존재한다.

책성 공제로 정의한다. 대표적 정책성 공제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이 있다.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은 보험과 경제적인 기능 면에서 동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공제회와 보험주식회사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보험주식회사는 자본금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가 보험주식회사를 소유하나, 공제회는 가입한 회원이 소유한다. 이에 보험주식회사는 불특정다수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여 그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공제회는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회원의 경제적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와 보험주식회사는 소유, 영리성, 가입대상 외에 법적근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주식회사는 「상법」과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제회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이들의 감독도 보험주식회사는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공제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소관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표 2〉 민간보험주식회사와 공제회의 차이점

	보험주식회사	공제회
소유	주주	회원(조합원)
영리성	영리	비영리
기초자산	자본금	출자금
가입대상	불특정다수	특정다수
최고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대의원회
법적근거	상법, 보험업법	민법, 특별법
관리·감독	금융감독조직	특별법에 의한 소관부처

공제회의 비영리는 공제사업의 핵심과 직결된다.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상당한 비율이 사업비와 주주이익으로 돌아간다. 2017년 「보험통계」의 보험료지수와 보험금 지급률에 의하면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 중 실제 계약자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45.0%⁵⁾에 불과하다.

반면, 공제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주식회사에 비해 상품비용이 낮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익을 배당할 주주가 없으므로 회원배당으로 돌아간다. 또한 공제상품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험주식회사와 달리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낮은 가격으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즉 상호부조의 원칙 아래에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호적 성격은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공제상품은 보험주식회사와 같이 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도 없으므로 다수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 내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급성으로 인해 대두된 공제회 방식은 사회보장체계 배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 회피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연대와 상호부조의 원칙하에 신속한 공제급부, 저비용 다수의 보호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종속적 노동환경과 실업, 사고경험, 노후대비가 공제회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서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되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주 분

5) 2017년 생명보험사의 보험료지수는 155%였는데, 이는 계약자가 15만 5천 원을 납입 시 10만 원이 적립되고 5만 5천 원은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적립된 보험료 중 실질 지급률은 69.7%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즉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에 15만 5천 원을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6만 9천7백 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 특성과 종속적 노동환경, 사회보호의 필요성,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 근로특성, 총 5개의 영역에서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오래전부터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직면한 노동자는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임금수준 개선, 장시간 노동의 금지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왔고,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Hirschman, 1970; Wilkinson and Fay, 2011). 그러나 대부분 플랫폼노동자는 엄격한 노동자성 판단기준 아래에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De Sefano and Aloisi, 2018). 특히 플랫폼에 전속되어 관리, 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가격결정권을 통한 경제적 지배종속 노동관계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에게 집단적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Cazes et al, 2019).

물론 공제회가 이해대변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나, 플랫폼노동자 대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제회가 공제사업뿐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 등 이해대변적 역할을 해야함을 보인 장진희·손정순(201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는 집단적 이해대변 역할 대한 욕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종속관계 관련 요인들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사용전속성, 플랫폼의 사용개수, 가격결정권,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월평균 수입, 주당 평균 노동시간 등을 분석모형에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해대변 기구 필요성의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이른바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밖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체계

에 속하지 못한 비정형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실업과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이대해변 단체가 결성되고 있다(박명준 외, 2014).

대표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예술인 보호를 위해 복지차원의 공제제도를 도입한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이유로 자주적 결사체인 워커즈콜렉티브를 설립하여 사회보험적 보호를 실시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실업이나 사고발생, 노후대비 등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는 노동자(worker)로 하여금 보호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체가 조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경험, 사고경험, 노후대비를 활용하여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의 기초통계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중에서 특히 사용종속적 노동환경과 실업, 사고발생, 노후대비와 같은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분석은 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음식배달 노동자 169명과 대리운전노동자 176명(총 34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플랫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플랫폼노동의 특성과 사회보험 취약성을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이 부업인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조사원의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가 병행되었는데, 온라인조사를 통한 표본은 85명, 대면조사를 통한 표본은 260명이었다.

설문조사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의 필요성, 근로특성,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 등 총 5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⁶⁾에서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를 조사하였는데, 플랫폼

6) 응답대상자의 성별비율을 보면 남성이 98.0%,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공제회 가입의향에 성별특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문제를 우려해 별도의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동노동자의 평균연령은 41.4세였으며, 최소 20세부터 최대 68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0점)부터 대졸 이상(2점)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0.56점을 보였으며 고졸 이하가 62.0%, 전문대졸은 20.3%, 대졸 이상은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비혼(0점)부터 기타(2점)까지 측정하였고, 평균 0.58점으로 비혼이 44.6%, 기혼이 5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용전속성, 가격결정권, 플랫폼 사용개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통해 플랫폼노동자가 얼마나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중 사용전속성은 ‘현재 업체 외에 다른 업체와 중복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와 어떠한 형태로든 중복계약이 불가능한 비중은 31.9%, 중복계약이 가능한 비중은 68.1%였으며, 평균은 0.68점이었다. 즉 보편적으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다수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인식과 달리, 조사결과 10명 중 3명은 플랫폼에 전속된 형태를 보였다. 실제 이용하는 플랫폼 수에서도 평균 1.71개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했다.

플랫폼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즉, 가격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미하는 플랫폼으로부터의 경제적 종속성이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제적 종속성은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수입)는 누가 결정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는 법적 근로자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15.7%에 그쳤다. 특히 이 응답 안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 본인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 본인과 플랫폼업체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모두 포함된 점을 생각해볼 때, 실제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시장가격을 고려해 본인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영자와 달리, 시장이 아닌 플랫폼의 일방적 통보로 가격이 결정되어 플랫폼에 높은 경제적 종속을 지닌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자성 판단의 주된 쟁점은 플랫폼이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종속적 지위에 두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플랫폼업체(본사/지사) 직원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 등을 받으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는 비중은 50.7%를 보이며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종속적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을 종합해보면 플랫폼이동노동자 대부분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가격의 결정권이 플랫폼에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는 등 높은 사용종속적 환경에 직면한 집단이었다.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사용종속적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낮은 수입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월 평균 순수입은 266.2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2020년 임금근로자 월 임금총액인 318만 원에 비해 51.8만 원 낮다. 플랫폼이동노동자 절대다수가 남성임을 고려해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 372.2만 원보다 무려 106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7.4시간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41.5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에 비해 주당 15.9시간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임금노동자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결과를 보여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용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필요성 역시 조사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보통의 임금노동자에 비해 실업이나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고대비에 취약하고, 노후대비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종진 외, 2019; 김준영 외, 2018). 이에 비자발적인 실업경험과 플랫폼노동에서의 사고발생, 노후대비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우선, 비자발적인 실업경험⁷⁾은 ‘최근 1년간의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었던 경

7)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음에도 이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책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가입의향이 보다 정확히 식별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비자발적 실업, 즉, 개인의 휴식이나 회복 등을 이유로 일을 쉬는 경우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면조사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에는 콜배정을 받지 못해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경험이 없으면 0점, 경험이 있으면 1점으로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0.70점으로 대다수의 플랫폼노동자가 최근 1년간 비자발적으로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여부'를 조사⁸⁾하였는데, 경험이 없으면 0점, 경험이 있으면 1점으로 파악하였고, 실업과 마찬가지로 평균 0.67점으로 유경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대비는 국민연금(0점),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1점), 노후대비 없음(2점)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1.30점으로 대다수가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결과를 보였다.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을 통한 대비는 15.1%에 그쳤고,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44.9%였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는 노동시장 진입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음을 경험하기도 하며, 노무제공 중 사고를 경험하거나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노후준비 역시 불안정한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된 공제회 가입의향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가 만들어진다면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⁹⁾에 대해 전혀 가입생각 없음(1점)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2.86점으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다수가 '가입생각 있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회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하였다.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전혀 모름(1점)부터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4점)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제회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역할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가장 높은 비중인 40.9%를 차지하며 평균 2.74점을 보였다.

8) 플랫폼이동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질환 등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한다.
9) 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제회란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금(회비)을 모아 운영하는 단체'로 설명하였고, 그 역할에 대해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정부를 상대로 한 이익대변, 노동환경 개선 등의 부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표 3〉 각 변수별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량(N = 345)

		변수설명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수	공제회의 필요성	전혀 가입생각 없음(=1)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까지	2.86	0.80	
설명 변수	개인 특성	연령	개인의 만 연령	41.4	11.5
		교육수준	고졸 이하(=0), 전문대졸(=1), 대졸 이상(=2)	0.56	0.78
		혼인상태	비혼(=0), 기혼(=1), 기타(=2)	0.58	0.55
	사용 종속 관계	사용 전속성	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이 가능(=0), 그렇지 않으면(=1)	0.68	0.47
		플랫폼 사용개수	개인의 플랫폼(앱) 사용개수	1.71	0.97
		가격 결정권	본인 또는 본인과 고객, 본인과 플랫폼 업체가 결정(=0), 그렇지 않으면(=1)	0.89	0.45
		업무지시, 관리, 감독	반응(=0), 그렇지 않으면(=1)	0.49	0.50
	사회 보호 필요성	비자발적 실업경험	최근 1년간의 실업경험 없음(=0), 그렇지 않으면(=1)	0.70	0.46
		사고경험	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0), 그렇지 않으면(=1)	0.67	0.47
		노후대비	국민연금(=0),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1), 노후대비 없음(=2)	1.30	0.72
		공제회 인지도	공제회 전혀 모름(=1)부터 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잘알고 있음(=4)	2.74	0.92
	근로 특성	월평균 순수입	개인의 월평균 순수입	266.2	81.4
근속연수		플랫폼노동의 근속연수	3.70	2.95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개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57.4	28.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 345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인적특성과 사용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정도를 가늠¹⁰⁾해보았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 필요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공제회의 가입의향은 전혀 가입생각 없음(1점)부터 매우 가입생각 있음(4점)까지의 상태로, 일정한 순서를 가진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비선형 관계가 요구되므로 순위형 로짓(ordered logit)모형이나 순위형 프로비트(ordered probit)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각 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 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위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계수 값은 일반적인 OLS의 계수 값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계수 값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만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추정된 계수 값의 정량적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를 편미분하여 로짓함수에 대응하여 산출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개념을 이용해야 한다. 한계효과는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해당 독립변수의 변화가 한 개인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특성,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 필요성, 근로특성 등이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순위형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각 독립변수의 계수 값에 대해 유의성과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모형선택의 통계학적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모형부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AIC 값이 가장 낮은 최적모형까지 제시하였다. 최적모형을 선별한 후 각 독립변수가 공제회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크기 산출을 위해 한계효과를 활용하였다.

10) 왜냐하면 앞의 각주에서와 같이 본 설문조사에서 공제회의 가입의향을 조사함에 있어 공제회에 대해 공제사업과 같은 공제회의 고유사업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한 기구로 설명하여 조사하였다. 이 때문에 공제회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공제사업(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뿐 아니라 공제회의 이해대변 기능을 기대하는 응답자도 포함되어 있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순위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대표적 플랫폼노동으로 꼽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보호 필요성과 이해대변 욕구를 공제회 가입의향을 통해 가늠해보고, 각 요인이 공제회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설립될 플랫폼이동노동자 공제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모형에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특성을 포함하였고, 사용종속관계에는 플랫폼노동을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앱)의 수와 계약형태로 분류한 사용전속성, 가격결정권을 통해 파악한 사용자로부터의 경제적 종속정도, 그리고 플랫폼업체로부터의 업무지시, 관리, 감독을 포함하였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최근 1년간의 비자발적 실업경험과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노후 대비 변수를 고려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내기 위한 노동특성에는 월평균 순수입, 근속연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활용하였다. 그중 월평균 순수입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결과 중 개인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모든 모형에서 대리운전노동자에 비해 음식배달노동자의 공제회 욕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연령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positive)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공제회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1에서만 포함된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된 경우 공제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용종속관계 중 다수 플랫폼과의 계약 여부를 통해 파악한 중복계약 여부에 따른 전속성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공제회의 가입의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사용자 전속성과 밀

접하게 관련된 플랫폼 이용개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 관리, 감독을 받는 플랫폼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제회 가입욕구가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입과 직결되는 서비스 가격결정 주체에 있어서 가격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보다 플랫폼에 의해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즉,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는 플랫폼과의 표면적인 계약형태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서비스 가격통제가 공제회의 가입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로특성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모형에서 임금수준과 공제회의 가입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negative)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임금군보다 저임금의 경제적 취약집단일수록 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해대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고, 실업 등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소득빈곤층의 가입의향이 높은 결과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플랫폼이동노동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플랫폼노동의 취약성 노출빈도가 잦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추정결과 역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회에 대한 가입의향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 장시간 노동에 직면할수록 공제회의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기구가 제한된 현실에서,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고, 가격결정권이 온전히 플랫폼에 있는 사용종속적 노동환경,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노동환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은 결과는 이들이 공제회를 통해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이해대변 기구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플랫폼이동노동자 역시 비자발적 실업에 자주 노출되

고 있었는데, 모든 모형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경험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제회 가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제회 가입의향에 관한 순위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개인 특성	업종(기준변수=음식배달)				
		대리운전	-1.03 ** (0.41)	-1.02 *** (0.40)	-0.88 ** (0.34)
		연령	0.03 * (0.02)	0.03 ** (0.02)	0.03 ** (0.02)
	교육수준(기준변수=고졸 이하)				
		전문대졸	0.84 *** (0.28)	0.84 *** (0.28)	0.86 *** (0.28)
		대졸	1.29 *** (0.34)	1.30 *** (0.38)	1.31 *** (0.33)
	혼인상태(기준변수=비혼)				
		기혼	0.12 (0.31)	- -	- -
		기타	-0.46 (0.61)	- -	- -
	사용 종속 관계	플랫폼 이용 수		0.07 (0.16)	
계약형태(기준변수=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이 불가)					
		체결가능	-0.30 (0.37)	-0.33 (0.36)	- -
가격결정권(기준변수=본인, 본인+고객, 본인+플랫폼이 결정)					
		플랫폼이 결정	1.14 *** (0.33)	1.09 *** (0.34)	0.95 *** (0.30)
업무지시, 관리 감독여부(기준변수=플랫폼으로부터 받지 않음)					
	지시·관리받음	0.46 * (0.26)	0.45 * (0.26)	0.45 * (0.25)	
사회 보호 필요성	실업경험(기준변수=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없음)				
		실업경험 있음	1.04 *** (0.30)	1.05 *** (0.29)	0.99 *** (0.28)
	사고경험(기준변수=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				
		사고경험 있음	0.04 (0.26)	-0.03 (0.25)	0.02 (0.25)
	노후대비(기준변수=국민연금 가입)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	0.48 (0.31)	0.47 (0.30)	0.48 (0.30)	
	노후대비 없음	0.39 (0.29)	0.36 (0.29)	0.32 (0.30)	
인지	공제회 인지도		0.54 *** (0.16)	0.56 *** (0.16)	0.56 *** (0.16)
근로 특성	ln(월평균 순수입)		-1.50 *** (0.47)	-1.50 *** (0.47)	-1.56 *** (0.46)
	근속연수		0.02 *** (0.00)	0.02 *** (0.00)	0.02 *** (0.00)
	주당 평균 노동시간		0.03 *** (0.01)	0.03 *** (0.01)	0.03 *** (0.01)
AIC		699.11	696.96	693.41	
Log pseudolikelihood		-328.56	-328.98	-329.69	

주: * p<0.1, ** p<0.05, *** p<0.01.

이는 플랫폼노동자에게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내지는 공제회 공제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필요성의 시급함을 드러낸다. 반면,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나 질병경험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민간연금 또는 노후대비가 없는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 장진희·손정순(2019)에 의하면 개인의 사고발생과 노후대비는 이미 민간영역에 크게 기대고 있어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미래의 노후대비나 불확실한 사고위험보다 당장에 직면한 실업과 같이 민간영역에서의 보호가 취약한, 경제적 충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한계효과 분석결과

순위형 로짓모형의 추정계수 값은 유의성과 방향성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적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해당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IC 값이 가장 낮은 모형 3(최적모형)의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다음의 <표 5>에는 각 변수들의 한계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노동자는 음식배달노동자에 비해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낮았고, 연령 역시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에서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대졸보다 대졸이상의 가입의향이 높았다.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을 의미하는 변수들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제 공에 따른 서비스 가격을 본인이 아닌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우, 즉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제회 가입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이 2.4% 감소하였다. 반면 매우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무려 12.7%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부터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제회에 전혀 가입할 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이 1.5% 감소하고, 매우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

할 확률은 5.5% 증가하였다.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일수록 공제회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음을 경험한 플랫폼노동자는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가입생각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무려 13.2% 높았다. 반면, 플랫폼이동노동 중의 상해사고, 질병경험이나 노후대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사회보험적 측면보다 실업에서의 취약성이 공제회 가입 욕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최적모형(모형 3) 한계효과 산출결과

		전혀 가입생각 없음 (Y=1)	별로 가입생각 없음 (Y=2)	대체로 가입생각 있음 (Y=3)	매우 가입생각 있음 (Y=4)	
개인 특성	업종(기준변수=음식배달)					
		대리운전	0.033	0.108	-0.035	-0.106
		연령	-0.001	-0.004	0.001	0.004
	교육수준(기준변수=고졸 이하)					
		전문대졸	-0.026	-0.119	0.040	0.105
		대졸 이상	-0.034	-0.175	0.034	0.175
사용 종속 관계	가격결정권(기준변수=본인, 본인+고객, 본인+플랫폼이 결정)					
		플랫폼	0.024	0.125	-0.022	-0.127
	업무지시, 관리 감독여부(기준변수=플랫폼으로부터 받지 않음)					
	관리 받음	0.015	0.061	-0.021	-0.055	
사회 보호 필요성	실업경험(기준변수=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없음)					
		경험 있음	-0.025	-0.138	0.031	0.132
	사고경험(기준변수=플랫폼노동 중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없음)					
		경험 있음	-0.000	-0.000	0.000	0.000
	노후대비(기준변수=국민연금 가입)					
	민간보험 또는 금융기관 예·적금	-0.018	-0.064	0.026	0.056	
	노후대비 없음	-0.012	-0.042	0.019	0.036	
인지	공제회 인지도	-0.019	-0.074	0.026	0.067	
근로 특성	월평균 순수입	0.052	0.208	-0.072	-0.188	
	근속연수	-0.001	-0.003	0.001	0.002	
	주당 평균 노동시간	-0.001	-0.004	0.001	0.003	

플랫폼노동자의 근로특성 한계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순수입이 1% 증가할수록 전혀 가입생각 없음을 선택할 확률은 5.2% 증가하였고,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무려 18.8%나 감소하였다. 즉, 임금수준은 공제회 가입의향과 매우 강한 부(negative)의 효과를 보였다. 근속연수의 경우,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전혀 가입생각 없음을 0.1% 감소,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0.2%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역시 1시간 증가함에 따라 전혀 가입생각 없음을 0.1% 감소, 매우 가입생각 있음은 0.3%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지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공제회 가입생각 있음은 선택할 확률은 6.7% 증가하였다. 즉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플랫폼노동에 장시간 종사할수록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한계효과를 통해 개인특성, 사용종속관계, 사회보호 필요성, 근로특성 등 각 영역의 변수 중 공제회 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그중 공제회에 대해 매우 가입생각 있음($Y=4$)에 대한 한계효과를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교육수준과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적 요인이 공제회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공제회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인은 월평균 순수입(-18.8%)이었으며, 가격결정권(-12.7%),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는 경험(13.2%)이었다. 반면, 근속연수(0.2%)와 주당 평균 노동시간(0.3%)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 크기는 작았다.

3. 시사점

분석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플랫폼으로부터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고, 노무제공에 대한 서비스 가격결정권이 없는 플랫폼이동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용종속적 노동환경에 있을수록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또한, 저임금

군에서 공제회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제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즉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사용종속적이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제회에 대한 높은 가입욕구는 이들이 공제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 내지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회보험 필요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제회 가입의향에 있어서 노후대비나 플랫폼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경험보다 비자발적 실업경험이 더욱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는 그 어떤 보호보다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실업으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핵심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고는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역시 사회보장체계 안에 포섭되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단계적 적용, 실업 판단기준 마련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공제회의 보완적 역할 역시 요구된다.

V. 결 론

1.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용종속적 노동환경과 저임금·장시간의 열악한 근로특성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다수 플랫폼이동노동자가 사회보장체계 안에 위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보장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통해 지배종속적 노동관계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비자발적 실업경험 및 상해사고나 질병경험, 노후 대비정도가 공제회 가입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식별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설립될 플랫폼노동자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지배종속적 노동관계에 위치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으며,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공제회를 통한 보호의 욕구가 높았다. 특히 임금수준과 가격결정권, 실업이 공제회 가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적이고 취약한 노동환경일수록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플랫폼이동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구에 대한 욕구 역시 관찰된 것이다.

최근 공제회를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 법률에는 향후 설립될 플랫폼노동자공제회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역할과 기능, 공제사업 등이 초창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모습과 유사하다. 특히 공제사업에 있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퇴직을 위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플랫폼이동노동자는 플랫폼노동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낮은 연령대로 인해 퇴직공제에 대한 욕구가 낮은 집단이며(장진희·손정순, 2019), 본 연구결과 어떠한 사회보험보다 비자발적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추후 설립될 플랫폼노동자공제회 공제사업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일부 중첩되기도 하지만, 공제회를 통한 보호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플랫폼노동자공제회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지배종속적 노동관계가 강할수록,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심화할수록 공제회에 대한 가입의향이 높아졌다. 이처럼 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일수록 가입의향이 높아지는 결과는 플랫폼노동자가 공제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설문조사 시 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지시킨 영향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보험적 측면 외에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제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가를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장진희 외, 2020)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발의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나 발의를 앞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공제회의 이해대변적 역할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후 설립될 공제회는 사회보험적 공제사업 외에도 이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최근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제회 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사용종속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공제회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적이고 취약하며,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플랫폼이동노동자일수록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제한적인 분석대상을 들 수 있다. 플랫폼노동의 범위는 지역호출형 기반의 플랫폼노동부터 웹기반의 클라우드워크까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확장세를 띄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호출형 기반의 플랫폼이동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본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또한 플랫폼노동자 모집단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하여 체계적인 표본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본 분석의 결과 저임금군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 공제회 가입에 있어서 ‘공제부금’의 규모가 큰 경우 저임금군의 플랫폼노동자가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회의 가입의향이 높게 나오더라도 현실에서의 공제부금의 크기에 따라 가입의향은 분석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공제회 가입에 요구되는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해대변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다소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용종속관계가 강할수록 공제회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이해대변의 기구 및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들었다. 물론,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공제회의 기능에 대해 고유기능인 공제사업뿐 아니라 이해대변적 역할이 가능함을 주지시켜 공제회가 공제사업과 이해대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공제회의 가입의향에는 이해대변 기구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해대변기구의 필요성을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면 더욱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플랫폼노동공제회 또는 이해대변기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종진 · 김영옥 · 김윤희 · 김윤영 · 김정훈 · 노성철 · 문수연 · 양경옥 · 이상아 · 이찬우 · 장희은 · 김진하 · 윤자호 · 신영규(2019).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 김준영 · 권혜자 · 최기성 · 연보라 · 박비곤(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도재형 · 김기선 · 조규식(20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

- 안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박명준·권혜원·유형근·진숙경(2014). 『노동이해대변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과정』.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김이선(2016). 「주변부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비노동조합적 시도: ‘준노조’의 한국적 개념화를 위한 일본적」. 『산업노동연구』 22 (2) : 35~77.
- 손정순(2018). 「비정규 노동자 이해대표 기제로서 비노조 이해대표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진영 내 CSO를 통한 이해대변 기제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4 (2) : 61~94.
- 심규범(2020). 『건설노동시장의 경험과 시사점』.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TF 제8차 발표자료.
-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 장우찬(2014).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노동정책연구』 14 (1) : 155~185.
- 장지연(2020).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2020-11) 한국노동연구원.
- 장진희·손정순(2019). 『지역수준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장진희·손정순·이향숙(2020).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정홍준·이정희·조혁진·노성철(2019). 「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화와 매개조직의 역할」. 『산업노동연구』 25 (3) : 41~78.
- 한인상·신동윤(2019).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日本共済協會(2019). “日本の共済事業 ファクトブック 2019”. 日本共済協會.
- Balaram, B., J. Warden and F. Wallace-Stephens(2017). “Good Gigs : A Fairer Future for the UK’s Gig Economy”.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RSA) Action and Research Centre.*

- Berg, J., M. Furrer, E. Harmon, U. Rani and M. S. Silberman(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port*.
- Cazes, S., A. Garnero, S. Martin and C. Touzet(2019).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and Worker Voice Arrangements in OECD Countries”. *OECD*.
- De Stefano, V. and A. Aloisi(2018). “European Legal Framework for Digital Labour Platforms”. *European Commision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 Farrell, D., F. Greig and A. Hamoudi(2018).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 : Drivers, Workers, Sellers, and Lessors”. *JPMorgan Chase Institute*.
- Fine, J(2005). “Community Unions and the Revival of the American Labor Movement”. *Politics and Society* 33 (1) : 153~199.
- Hirschman, A.(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ropotkin, K. P.(2012). “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Radford*.
- Wilkionson, A. and C. Fay(2011). “New Times for Employee Voice.” *Human Resource Management* 50 (1) : 65~74.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Platform Workers' Willingnes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Jang, Jinhe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each of the following factors - dependent, low-wage and long-hour work environment; involuntary termination; experience of workplace injury and disease; vulner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surance, such as inadequate old-age preparation - had on the willingness of the rapidly increasing platform worker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collective voice and social insurance in order to advocate for the platform workers who find themselves in poor and dominant-dependent work environments. The data from the 2019 Study on the Platform Workers Environment by the FKTU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an ordered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if, in the course of providing labor, workers were subject to workplace guida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if the service charge was determined by the platform - in other words, in case of economic dependency - more workers were willing to join the association. Likewise, experience of involuntary termination and lower wage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necessity for association membership. In this regard, th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targets platform workers, focused on unemployment deduction that can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while also suggesting that necessity of the ro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Keywords : platform worker, mutual aid association, interest-representing organization, unemployment deduction, ordered logit model